

파주시수도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83
----------	-----

제출년월일 : 2001. 9.

제 출 자 : 파주시장

□ 제안이유

수도법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리에 관한주체와 사용량 분석결과 구경변경시 시설분담금 징수와 환불, 원인자부담의 부과대상, 수도계량기 위치와 구경 결정, 중수도에 사용료감면 규정, 옥내누수 감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급수공사 대행업자지정 수수료 인상(안제10조)

건당 신규 10,000원, 갱신 5,000원

나. 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안제11조)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다. 공사비의 산출방법 (안제12조)

급수공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 실제공사비로 한다.

라. 공사비의 선납 (안제13조) : 정액제 내용 삭제

마. 시설분담금 (안제14조)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 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를 할 수 있다

바. 원인자부담금 (안제14조의2)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등

사. 수도의 사용(안제19조) :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아. 요금등의 감면 (안제40조)

- 중수도의 업종별수도요금감면

(가정,업무,공업용 65%까지, 영업용 30%까지)

- 옥내누수 복구시(지하매설부문) 수도요금감면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1호외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 1건당 10,000원
2. 갱신 1건당 5,000원

제11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삭제한다.

- ① 급수공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 실제공사비로 한다.
- ② 급수공사 추진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사항 발생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13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동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아니할 경우 직권으로 구경 절하할 수 있다

제14조의2(원인자부담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수도법 제5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시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수도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7.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 ②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제29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 나. 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 ③ 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의 기록된 사용수량을 점검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조치토록 한다
- ⑥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점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⑦ 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가정용으로 발전이 곤란한 지하부분 이어야 한다.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
-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수요자로부터 50%의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재정지원)
-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사진 3매 (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장면)와 수선공사 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상하수도과(☎940-4801)
입 안 자	상하수도과장	김 홍 식
	수도행정담당	최 영 호
	담 당 자	윤 태 돈

신 · 구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생략) ② (생략) 1. 신규 1건당 4,000원 2. 갱신 1건당 2,000원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신규 1건당 10,000원 2. 갱신 1건당 5,000원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생략)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된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그 외의 급수장치시설을 수도사용자가 책임 유지·관리한다	제11조(공사비부담 및 급수장치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등이 진다 다만,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자등이 관리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는 재료비, 노무비, 시납부금의 합계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원가 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라 산출한 실제공사비로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②급수공사 추진중 현장 여건으로 인한 공사비 증감 사항 발생시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③급수공사는 정액제로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삭제)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②(생략)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②(현행과같음) ③ (단서삭제)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변 정
부 또는 추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원인자부담금) (신 설)	④ (삭 제) 제14조의2(원인자부담금) ①수도법제53조 및 수도법시행령 제35조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다만, 시가 공공목적으로 하는 수도공사는 제외 할수있다 1. 주거시설 :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숙박시설 : 숙박시설 건축 연면적 600㎡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 3. 교육시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외한 시설 4. 의료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5. 판매유통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6.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개발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등 대단위사업 7. 기타시설 : 건축연면적 1,500㎡이상 ②원인자 부담금의 산출기준, 부과시기, 납부방법등 필요한 세부기준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생 략) ② (신 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
제29조(업종의 구분) ①~②(생략) ③1개의 수도계량기로 영업용과 1가구이상의 가정용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2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월 사용량이 영업용가구와 관계없이 가구당 월사용량의(이하 "가정용 가구당"이라 한다)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사용량은 가정용 15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은 영업용 사용량으로 한다. 다만,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10세제곱미터로 하고 그 잔여량이 영업용의 기본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영업용 기본량을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기본량)를 합산한 양보다 적은 경우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가정용 기본량을 적용하고, 이에 영업용 기본량을 가산한다. 다만, 위의 수도요금에 영업용 적용요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월사용량은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삭 제)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생 략)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업종의 수도요금	제40조(요금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중인 자에게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수도요금의 감면

신규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
	대상업종 및 감면액은 다음과 같다 가.가정용,업무용,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까지 감면할 수 있다 나.영업용에 대해서는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30%까지 감면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 설)	③수도요금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단,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신 설)	④중수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량은 수량 메타기에 의해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신 설)	⑤시는 매월 정례일을 정해 수량메타기의 기록된 사용 수량을 검침하고 이에 근거한 요금 감면액을 산정하여 수도요금 고지서 발급시 조치토록 한다
⑥ (신 설)	⑥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검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신 설)	⑦옥내누수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복구공사 시행여부를 증명한 수 있을 경우에는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대상은 가정용으로 발건이 곤란한 지하 부분 이어야 한다.(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신구조문 대비표

당 초	변 경
⑧ (신 설)	<u>지상누수는 제외)</u>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은 누수된 달의 사용량에서 해당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양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수요자로부터 50%의 감면된 요금을 일반회계의 예산에서 재정지원)
⑨ (신 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누수요금 감면신청을 할 때에는 수선사진 3매(누수장면, 공사장면, 공사후 배경장면)와 수선공사 확인서(간이세금계산서 또는 수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